#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14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 박상웅・신동욱・서일준

김성원 • 유용원 • 서천호

이인선 • 박덕흠 • 강승규

김미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려면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고, 업종현황 등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자연·인문·사회·환경 등 일반 현황과 토지의 이용 현황, 지원기반시설 현황 등 다양한 사항을 기초조사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업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해서만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에 제정되었는데, 비도시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어 공업지역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공업지역 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하여 공업지역 기초조사가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업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으로 공업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항, 제54조제4항 신설, 제67조제5항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1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업종현황 등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 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자연 · 인문 · 사회 · 환경 등 일반 현황
- 2. 인구 변동의 현황 및 추세
- 3. 산업별ㆍ기업체별 현황 및 발전 추세
- 4. 토지의 이용 현황
- 5. 지원기반시설 현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항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7조의 제목 중 "처분협의"를 "처분협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업정비구역 내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기업을 포함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제8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생 략)	위한 기초조사) ① (현행과 같
	음)
②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2
위한 업종현황 등 기초조사에	<u>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u>정한다</u> .	
<u>&lt;신 설&gt;</u>	1. 자연・인문・사회・환경 등
	<u>일반 현황</u>
<u>&lt;신 설&gt;</u>	2. 인구 변동의 현황 및 추세
<u>&lt;신 설&gt;</u>	3. 산업별ㆍ기업체별 현황 및
	<u>발전 추세</u>
<u>&lt;신 설&gt;</u>	4. 토지의 이용 현황
<u>&lt;신 설&gt;</u>	5. 지원기반시설 현황
<u>&lt;신 설&gt;</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
	초조사의 항목 및 방법 등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u>한다.</u>
제54조(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①	제54조(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
	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관리지

제67조(국·공유지의 <u>처분협의</u>) ① ~ ④ (생 략) <신 설>

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주하 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 례제한법」, 「지방특례제한 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 법인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7조(국・공유지의 처분협의 <u>등</u>)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업정비구역 내의 국유재 산 및 공유재산은 「국유재산 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기업 을 포함한다)에게 수의계약으 로 대부 · 사용 · 수익하게 하거 나 매각할 수 있다.